

2021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최종 평가결과



충 청 남 도 의 회
(입 법 정 책 담 당 관)

2021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최종 평가결과

❖ 2021년 조례 사후 입법평가 대상조례(188건)에 대한 최종 평가결과임

□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2021년 평가대상 조례 총 188건에 대한 최종 평가결과임.

- ① (단순) 일반정비 92건, ② 개정권고 58건, ③ 통합권고 5건*,
④ 폐지권고 12건**, ⑤ 기타 의견 9건

* 5건 중 3건은 통합권고, 2건은 통합 또는 개정권고(통합하지 않을 경우 개정 필요)

** 12건 중 11건은 폐지권고, 1건은 폐지 또는 개정권고(폐지하지 않을 경우 개정 필요)

【최종 평가결과(총괄)】

정비항목 위원회(조례총계)		일반정비		개정권고	통합권고		폐지권고		기타	현행유지	정비필요
계	(188)	92*	(160)**	58	3	(5)	11	(12)	9	15	244***
기 획 경 제	(26)	10	(24)	11	1	(1)	2		1	1	40
행 정 문 화	(36)	18	(31)	13	-		2		2	1	48
복 지 환 경	(50)	27	(44)	17	1	(1)	1		2	2	66
농수산해양	(23)	15	(21)	6	-		-	(1)	0	2	28
안전건설소방	(15)	6	(11)	6	-		-		1	2	18
교 육	(38)	16	(29)	5	1		6		3	7	44

* 단순 일반정비만 합산

** 단순 일반정비 및 개정권고 등 중복 정비항목 합산

*** 정비필요는 정비항목 중복사항 합산

※ 빨강색은 통합·폐지권고 외에 개정권고 등 중복사항 합산

□ 정비항목별 평가결과(요약)

정비 항목	이 유	평가결과																				
일반 정비	목적조항 약칭사용, 법령 제명 및 조례 제명 오기, 인용 법령 조항 오기, 조례를 주체로 구성한 문장 정비, 상위법령 개정 시 인용조항의 위치이동으로 조항 변경된 사항 미반영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포함)	188건 중 총 160건 160건 중 92건은 단순 일반정비만 필요 ※ 68건은 일반정비 및 개정 등 중복의견 포함																				
개정 권고	상위법령의 내용상 개정사항 미반영, 법령상 조례 규정 사항 규칙으로 규정, 상위법령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188건 중 58건																				
통합 권고	유사 조례와 통합 필요	188건 중 5건 - 5건 중 3건은 통합권고 - 5건 중 2건은 개정 또는 통합권고																				
	※ 개정 또는 통합권고(2건)는 통합하지 않는다면 개정필요																					
	<table><tr><th>연번</th><th>조례명</th><th>상임위</th><th>개선방안</th></tr><tr><td>21</td><td>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td><td>기획경제</td><td>개정/통합</td></tr><tr><td colspan="4">※ 통합대상 : 충청남도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td></tr><tr><td>69</td><td>충청남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td><td>복지환경</td><td>개정/통합</td></tr><tr><td colspan="4">※ 통합대상 : 충청남도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조례</td></tr></table>		연번	조례명	상임위	개선방안	21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기획경제	개정/통합	※ 통합대상 : 충청남도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9	충청남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환경	개정/통합	※ 통합대상 : 충청남도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연번	조례명	상임위	개선방안																		
21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기획경제	개정/통합																			
※ 통합대상 : 충청남도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9	충청남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환경	개정/통합																			
※ 통합대상 : 충청남도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권고	상위법령 개정·폐지, 중복조례 존재 등으로 폐지 필요	188건 중 12건 - 12건 중 11건은 폐지권고 - 1건은 개정 또는 폐지권고																				
	※ 개정 또는 폐지(1건)는 폐지하지 않는다면 개정필요 의견																					
	<table><tr><th>연번</th><th>조례명</th><th>상임위</th><th>개선방안</th></tr><tr><td>120</td><td>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td><td>농수산해양</td><td>개정/폐지</td></tr></table>		연번	조례명	상임위	개선방안	120	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농수산해양	개정/폐지												
연번	조례명	상임위	개선방안																			
120	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농수산해양	개정/폐지																			
기타	시행규칙 제정 권고	2건 (중복포함 4건)																				
	위원회·협의회 관련 권고	4건 (중복포함 8건)																				
	계획수립 관련 권고	0건 (중복포함 4건)																				
	폐지된 조례	3건																				
현행 유지	개정이 불필요한 조례	15건																				

조례별 평가결과 및 평가의견(요약)

순번	조례명	상임위	조례 유형	평가결과	비고	의견
1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기획경제	자치	일반 정비		문장부호정비, 수당지급 관련 조항 삭제 인용법령 제명 개정사항 반영, 문장부호 정비
2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기획경제	위임	일반/개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도록 정비 검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책임관에 관하여 지정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개정 검토
3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기획경제	자치	일반/개정		법령에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두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8조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 대하여 재량규정으로 둘 것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임무를 수행할 자를 명확히 규정 조례 제12조에서 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도 이와 같이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이를 설치할지 여부를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강행규정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
4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	기획경제	자치	일반/폐지	조례 폐지 권고	1996년 조례 제정 이후 25년간 개정없이 운영해 왔으며, 조례를 활용한 별도의 프로젝트팀을 운영한 실적이 2000년 이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조례 폐지 권고
5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획경제	자치	개정 권고		위원회 운영 규정이 아니므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아닌 이 조례에서 근거를 두어 지급하도록 규정 정비
6	충청남도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	기획경제	자치	일반/개정/기타	위원회 운영 권고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데, 기초자료에서는 위원회 관련 실적이 없음.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위원회 개편을 비상설로 변경 검토

7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기 획 경 제	자치	일반/개정/기타	위원회 구성운영 권고	위원회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 가능하므로 위원을 제외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정비 충청남도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조례 개정 후 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을 확인할 수 없음.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권고 필요
8	충청남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기 획 경 제	자치	일반 정비		
9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기 획 경 제	위임	일반/개정/기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수립하도록 정비하고 법에 따라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제6항 신설 검토
10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	기 획 경 제	자치	일반/기타	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 권고	충청남도 경제상황 점검회의는 도내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위기 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구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된 결과에 따라 위기상황을 대처하게 된다면 신속한 위기 대응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고, 인건에 대한 심의나 자문을 통해 협약을 도출해 내는 위원회 기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의견을 집행부에서 추가로 제시함 이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소집을 상반기 하반기에 1회씩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14조제1항을 개정하여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11	충청남도 노동자 복지회관 조례	기 획 경 제	자치	일반 정비		
12	충청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기 획 경 제	자치	일반 정비		
13	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기 획 경 제	자치	일반/개정/기타	규칙 제정 권고 / 실태 조사 시행 권고	조례 제10조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규칙이 제정되지 않음. 규칙 제정 권고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6조제3항에서 연도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에서 실태조사 규정을 삭제하고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에 따른 조사에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임

14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기 획 경 제	자치	일반/기타		문장부호, 약칭 정비, 연임 관련 조항 삭제 (집행부 추가 제시 의견에 따르면 생활임금 적용 범위 확대를 위 해 민간위탁 분야 소요 비용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 등 시행 필요)
15	충청남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기 획 경 제	위임	일반/개정/기타	계획 수립 관련 실효성 확보 권고	동 조례상 계획과 연계된 기본계획 또는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16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기 획 경 제	자치	일반 정비		
17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기 획 경 제	자치	일반 정비		
18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기 획 경 제	자치	일반 정비		
19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기 획 경 제	위임	일반 정비		
20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기 획 경 제	위임	일반/개정		위원회 설치를 강행규정으로 하였으므로 다른 위원회가 대행 하도록 하는 규정도 강행규정으로 두도록 정비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로 2021.9.30. 개정됨
21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기 획 경 제	자치	일반/개정/통합/기타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의 경우 외연의 국제화를 중심으로 조례의 조문이 구성되어 있음. 최근 외국인의 도내 유입 및 정착 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를 현실에 적합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조례 제6조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립된 계획의 적절성 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므로 유관조례(충청남도 지역경제외 교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의 연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2	충청남도게임산업법인출자에관한조례	기 획 경 제	위임	일반/폐지		「충청남도게임산업법인출자에관한조례」는 충청남도 게임산업 발전 을 위해 제정하였으나, 2002년 게임산업법인 설립자본금 출자 이후 조례 관련 사업은 미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폐지 권고
23	충청남도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기 획 경 제	자치	일반 정비		
24	충청남도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기 획 경 제	위임	현행 유지		
25	충청남도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기 획 경 제	자치	일반/통합/기타		유사 법령 및 유사 조례가 존재하므로 필요한 조항 여부를 판단하여 「충청 남도 에너지 조례」 등으로 통합하고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 을 것임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제5조에서 에너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이 조례 관련 사항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 로 심층 분석을 통하여 조례 통합 검토(조례 제10조에 따른 충청남도 LED 조명 보급 촉진위원회도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에너지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6	충청남도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기 획 경 제	위임	일반/개정		조례 제1조에서 지원대상선정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구역 선정 방법 및 절차를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만 '지원 대상구역 선정 방법 및 절차'는 실질적으로 사군과 도시가스회사가 협의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매년 지원 대상구역을 선정(조정)하며,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집행부 추가 의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여건이 사군별로 상이하여 도에서 지원 대상구역 선정 방법 및 절차를 규칙으로 정할 경우, 사군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개정 검토
27	충청남도 도민봉사실 운영 조례	행 정 문 화	자치	일반/폐지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민원상담위원을 두어 도민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데 콜센터 등을 통해서 이 역할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 조례 운영의 실익이 있다고 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조례 폐지 검토
28	충청남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	행 정 문 화	자치	일반/개정		모니터의 인원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위원의 사망은 당연해책사유이므로 삭제
29	충청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행 정 문 화	위임	일반 정비		
30	충청남도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행 정 문 화	자치	일반/개정		상당사 인권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 검토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방안 검토 다만 상당사 인권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의무 관련 조항 신설 검토(민간위탁 운영 관련 협약서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조례에 규정을 신설할 필요는 없다는 집행부 추가 의견을 확인함)
31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행 정 문 화	자치	일반/기타		집행부의 의견과 같이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에 따라 2021.3.22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실정에 맞게 양 조례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심층 분석을 통하여 검토 필요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어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에 관한 지역치안협의회 사업을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조례로 통합할 필요 있음(집행부 추가 의견)
32	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행 정 문 화	자치	일반 정비		
33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행 정 문 화	자치	일반 정비		
34	충청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행 정 문 화	위임	일반 정비		

35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행 정 문 화	자치	일반 정비		
36	충청남도민의 날 운영 조례	행 정 문 화	자치	일반/개정		도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에 예산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예산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 규정 도입 검토
37	충청남도 도민헌장 조례	행 정 문 화	자치	일반/개정		도민헌장의 제정에 관한 규정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특별한 분석내용은 없으나, 도민헌장의 활용 및 운영에 대한 규정 신설 검토
38	충청남도 도민장에 관한 조례	행 정 문 화	자치	일반 정비		
39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행 정 문 화	자치	일반/폐지		집행부 자료에서는 법률상 조례가 없어도 체불임금 문제 발생이 없으므로 조례 실효성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련 법령 확인함 조례 폐지 검토
40	충청남도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행 정 문 화	자치	일반 정비		
41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행 정 문 화	자치	개정 권고		인용법령 조항 정비 필요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는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에 관한 규정으로 인용이 적절하지 않음
42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행 정 문 화	자치	일반/개정		계획수립의 시기를 명확하게 하도록 규정 정비
43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행 정 문 화	자치	일반/개정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맞춰 "고등학교" 및 "고등학생" 삭제 검토
44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행 정 문 화	위임	현행유지		
45	충청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행 정 문 화	자치	기타	조례 폐지됨	이 조례는 2021.4.30. 폐지되었으며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
46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행 정 문 화	자치	일반 정비		
47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행 정 문 화	자치	일반/개정/기타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가 진행되도록 권고 지도감독을 하도록 도지사에게 의무를 부여한 것에 맞게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의 경우 지원금 회수를 임의 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의 형식으로 정비하여 지도 감독의 실효성 확보 검토
48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행 정 문 화	자치	일반/개정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시 청년 미취업실태 조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임의규정으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규정 정비
49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행 정 문 화	위임	일반 정비		
50	충청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행 정 문 화	자치	일반/개정		인용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은 2021.1.12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삭제된 규정임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음

51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행 정 문 화	자치	일반/개정/기타		조례상의 규정이 중복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경우(조례 제9조 관람의 금지 제10조 행위의 제한도 있고 명확하게 규정이 필요한 사항(조례 제45조에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물을 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도 있음. 이와 같이 불명확한 규정들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조례 제38조에서 유물수집 실무위원회를, 제39에서는 유물평가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양 위원회는 단지 내에 두는 것인지 도시사 소속으로 두는 것인지 규정이 없음 제23조제5호에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전액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운전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을 동반한 경우 중에서 전액면제해야 하는 경우가 없는지 검토하여 확대 필요
52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행 정 문 화	자치	일반 정비		
53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행 정 문 화	자치	일반 정비		
54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행 정 문 화	자치	기타		「충청남도 문화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2021.1.1.) 제정으로 조례 폐지됨
55	충청남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에 관한 조례	행 정 문 화	자치	일반/개정		조례 제4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의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부채납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 정비 검토
56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행 정 문 화	위임	일반 정비		
57	충청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	행 정 문 화	자치	일반 정비		
58	충청남도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행 정 문 화	위임	일반 정비		
59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행 정 문 화	자치	개정 권고		사청각장애인 관광객을 위한 사청각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에 관한 규정 신설 제안 상위법령과의 중복 및 저촉되는 사무위탁 규정을 삭제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실적을 관리하여 다음연도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제안
60	충청남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행 정 문 화	위임	일반 정비		
61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행 정 문 화	자치	일반 정비		
62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행 정 문 화	위임	일반 정비		
63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복 지 환 경	자치	현행 유지		

64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복 지 환 경	자치	일반 정비		
65	충청남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복 지 환 경	자치	일반/통합/기타		조손가정에 대한 행정적 경제적 지원을 위한 자치조례로서 목적은 정당하 나 실질적인 운영 실적이 없고 충청남도 조례 중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 원 조례」(사행 2020. 4. 1) [충청남도조례 제4679호, 2020. 4. 1, 일부개정]의 내용과 중첩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통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66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복 지 환 경	위임	폐지 권고		운영실적 저조 등 실효성이 부족하여 폐지 권고
67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복 지 환 경	위임	일반 정비		
68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복 지 환 경	위임	개정 권고		청소년문화·교류활동의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 검토
69	충청남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복 지 환 경	자치	개정/통합		현행 조례의 구성에 큰 문제는 없으나 조례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 해 다른 시도의 유사조례를 참조하여 협의회 또는 자문위원회 설치와 대 부분의 유사조례가 포함하고 있는 학습계좌제 등의 신설을 검토 도내 유사조례와의 비교검토를 통한 통폐합도 고려(예컨대 「충청남도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조례」)할 수 있을 것임
70	충청남도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복 지 환 경	자치	일반/개정/기타	규칙 제정 권고	규칙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7조,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규칙 제정 권고 향후 조례의 목적이 아동 및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공동생활가정 형성을 통한 자립과 지원인데 보호가 필요한 또 다른 대상인 노인이나 여 성 등에 대한 지원도 추가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71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복 지 환 경	위임	일반 정비		
72	충청남도 여성장애인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	복 지 환 경	자치	일반/폐지/기타	유지하는 경우 규칙 제정 권고	조례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미추진 중인 조례로 실효성 없음 폐지 권고 조례를 유지하는 경우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보조금의 시·군 비율 및 지급금액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 임하고 있으므로 규칙 제정 권고
73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복 지 환 경	위임	일반 정비		
74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복 지 환 경	위임	일반/개정		부정확한 법령인용의 정비와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대해서는 보완 필요 「아동복지법」 제23조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에 대한 규정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조문은 법 제22조임
75	충청남도 임신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복 지 환 경	위임	일반 정비		
76	충청남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복 지 환 경	자치	일반 정비		

77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 지 환 경	위임	일반/개정/기타	계획 수립 권고	조례 제3조에서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교육청이 주축이 되어 실행 가능한 사업이므로 도청만의 계획수립은 어렵다는 집행부의견 제시가 있었음. 그러나 이 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획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계획 수립 권고
78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복 지 환 경	위임	일반 정비		
79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복 지 환 경	자치	일반/기타		도내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 조례로서 구성과 체계는 적절해 보이나 도내 노인일자리 창출 복지시설 등의 지원과 같은 유사 또는 개별 지원 조례도 존재하므로 전체적인 통합을 검토하거나 본 조례를 다른 자자체의 경우처럼 기본조례 형식으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제6조제2호의 경우 제2호의 경우 퇴소시키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퇴소 시키도록 단서 조항 검토
80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복 지 환 경	위임	일반/개정		
81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복 지 환 경	자치	일반/개정		특별한 개정사항 없으나 계획 수립 등의 의무부과는 노력의무 정도로 개정 검토
82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복 지 환 경	자치	개정/기타	계획 수립 권고	자치법규입안기준에 대체로 부합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비밀준수의무 등의 조항을 보완 검토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매년 센터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별도 계획 마수립하고 있다고 기초자료에 적시함. 센터에서 수립하는 시행계획과 도 전체의 시행계획은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시행계획 수립 권고
83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 지 환 경	위임	일반 정비		
84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 지 환 경	자치	일반 정비		
85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 지 환 경	자치	일반 정비		
86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복 지 환 경	자치	일반/개정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충청남도사회보장위원회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처우개선위원회를 두기 보다는 충청남도사회보장위원회 안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위원회 설치 근거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정비하고 현재와 같이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시하는 방안 검토
87	충청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복 지 환 경	위임	일반 정비		
88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복 지 환 경	위임	일반/개정		선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직접 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여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정비 검토 위탁취소시 부대시설 등을 도지사에게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충청남도에 귀속하도록 규정 정비

89	충청남도 장애인노안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복 지 환 경	위임	일반 정비		
90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복 지 환 경	위임	일반 정비		
91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복 지 환 경	위임	일반 정비		
92	충청남도 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	복 지 환 경	위임	일반 정비		
93	충청남도 희망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복 지 환 경	자치	일반/개정/기타		위탁취소는 중대한 변경이므로 위탁취소가 필요한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정비
94	충청남도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 지 환 경	자치	현행 유지		
95	충청남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	복 지 환 경	위임	일반 정비		
96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복 지 환 경	자치	일반 정비		
97	충청남도 헌혈 권장 조례	복 지 환 경	위임	일반/개정/기타	사업계획 수립 권고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서 “구성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고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도 역시 임의 규정으로 협의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강행규정으로 정비 검토 조례 제4조에서 헌혈권장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계획수립을 권고
98	충청남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복 지 환 경	자치	일반 정비		
99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복 지 환 경	자치	일반/개정		기존에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 중 외국인환자 관련 사항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이동되어 「의료법」에서는 관련 조항이 삭제되는 등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 필요
100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복 지 환 경	자치	일반 정비		
101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복 지 환 경	자치	일반 정비		
102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복 지 환 경	자치	일반 정비		
103	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복 지 환 경	위임	일반 정비		
104	충청남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 지 환 경	자치	일반/개정/기타		조례 제5조에서는 충청남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집행실적으로 제7회 충청남도지사배 전국마용경연대회 개최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음을 제시하였으나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의 일부로 보이며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부 포괄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심층 분석을 통하여 지원계획 수립 등 관련 사항을 확인 후 계획수립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계획수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정비 검토

105	충청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	복 지 환 경	자치	일반 정비		
106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복 지 환 경	자치	일반/개정		총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운영 규정을 정하도록 문장 정비
107	충청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복 지 환 경	자치	일반/개정		조례 제8조 '피해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절차와 시기 등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에서 피해액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는 각 시군별 조례에 정해져 있어 도에서 별도 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없음
108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복 지 환 경	위임	일반/기타		「환경교육진흥법」이 2021.1.5.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1.6. 시행예정임 이에 맞춰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심층 분석하여 정비안 마련 필요(시도 환경교육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등 조례 규정과 연계된 사항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마련 필요)
109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	복 지 환 경	자치	일반/기타	위원회 운영 권고	위원회는 조례 제13조에 따른 건강피해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20년 및 2021년에 각종 건강영향조사가 계획대로 수행되었음에도 위원회가 개최실적이 없다는 점에서 위원회 운영 권고 필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을 위원회 없이 진행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음
110	충청남도 환경보전 관계법령 위반사업장의 공표에 관한 조례	복 지 환 경	자치	일반 정비		
111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복 지 환 경	자치	일반/개정/기타	위원회 구성 및 개최 권고	충청남도 물관리위원회를 둔다고 조례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2018.12.31.에 위촉기간 만료 후 미 위촉 상태임 조례 제15조에서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행이 필요함 다만 집행부 기초자료에서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하향하고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이를 반영하여 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정기회의를 없애고 필요한 경우 개최하도록 정비 물관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물 관련 유사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예정(집행부 추가 의견)
112	충청남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	복 지 환 경	위임	일반 정비		
113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농수산해양	자치	일반 정비		
114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농수산해양	위임	일반 정비		
115	충청남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	농수산해양	자치	일반/개정		조례 제6조에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의 근거가 되는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의 개정으로 제6조 정비 필요 -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3농정책위원회」로, 「제17조의 분과위원회」로 각각 수정

116	충청남도 농어촌특산물 상설 전시 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농수산해양	자치	일반/개정		운영위원회를 상설보다는 시안발생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조항을 일부 수정하고 「충청남도 농어촌특산물 상설 전시 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를 개정하여 「정기회」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필요시 소집하도록 규정 정비
117	충청남도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농수산해양	자치	일반 정비		
118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농수산해양	자치	일반 정비		
119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농수산해양	자치	일반/개정		조례 제15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계획 수립시에 반영하도록 하여 결과의 환류가 이루어지도록 정비 검토
120	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농수산해양	자치	일반/개정/폐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2019.12.31.개정되어 2020.5.1.부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운영되고 있음. 수년간 조례 운영 실적 전무하므로 조례 폐지 검토
121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	농수산해양	자치	일반/개정		조례 제7조제3항 “부적합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 요청하는 내용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상충되어 재심의 요청 기간을 기존 15일 → 60일로 개정 필요
122	충청남도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농수산해양	자치	일반 정비		
123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농수산해양	자치	일반 정비		
124	충청남도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농수산해양	자치	일반 정비		
125	충청남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농수산해양	자치	일반 정비		
126	충청남도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	농수산해양	자치	일반 정비		
127	충청남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농수산해양	자치	일반 정비		
128	충청남도 항만 활성화 지원 조례	농수산해양	자치	일반 정비		
129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농수산해양	자치	일반/개정		지원대상인 연합회는 현재 존재하며,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또한 운영 중으로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관리(동 조례를 주관하던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는 폐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장기적으로는 이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30	충청남도 농업인대학 및 귀농대학 설치·운영 조례	농수산해양	위임	일반 정비		

131	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농수산해양	자치	일반 정비		
132	충청남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농수산해양	위임	현행 유지		
133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 조례	농수산해양	위임	일반 정비		
134	충청남도 종자 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농수산해양	자치	현행 유지		
135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입업시험 등에 관한 조례	농수산해양	자치	일반 정비		
136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전건설소방	자치	일반/개정		운영의 주체는 도지사이며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예산지원을 강제하는 입법례는 찾기 어려움 통상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후 행정청의 재량에 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137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안전건설소방	자치	일반 정비		
138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	안전건설소방	위임	일반/개정		위원회를 필요할 때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비상설화 함
139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안전건설소방	자치	개정/기타	협의회 구성 등 이행 권고	조례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 않으며 조례에서는 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협의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음 협의회 구성 등 이행을 권고함과 동시에 규정개정을 통한 임의기구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
140	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안전건설소방	자치	기타	조례 폐지됨	2021년 7월 20일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동 조례는 이미 폐지되었음
141	충청남도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안전건설소방	위임	일반 정비		
142	충청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안전건설소방	자치	현행 유지		
143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전건설소방	위임	일반/개정		상위법령(산업단지 안하기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내용 반영 정비
144	충청남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안전건설소방	위임	일반 정비		
145	충청남도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안전건설소방	자치	일반 정비		
146	충청남도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안전건설소방	자치	일반 정비		
147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안전건설소방	자치	일반/개정		장학생 선발을 자체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있지 않음 장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하도록 규정 정비 검토

148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		자치	일반 정비		
149	충청남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조례	안전건설소방	위임	현행 유지		
150	충청남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	안전건설소방	자치	일반/개정		장비사용계획을 구체화하여 규정하도록 제5조 정비 제안
151	국립고등학교입학생선발고사공동출제수수료징수조례	교육	자치	일반/폐지		조례 유지의 실익이 없다는 집행부 의견에 따라 폐지 권고 2021.10.22. 자로 폐지조례안 제출되어 있음(집행부 추가 의견 확인)
152	충청남도 중·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교육	위임	기타	규칙 제정 권고	이 조례 제10조를 장학금의 관리 장학금의 지급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명에 맞게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근거 규정 정비 및 교육규칙 제정 검토
153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	자치	일반/기타	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교육복지민관협의회를 설치하여 중장기계획의 수립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치 및 운영을 하도록 권고 필요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설치 협의체가 너무 많아 업무 과중이 심하고 유명무실한 협의체가 많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집행부 추가 의견) 집행부 의견에 따라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등에서 이 역할을 대행하도록 규정 마련 검토
154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	자치	현행 유지		
155	충청남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교육	위임	일반/폐지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사항은 위의 관련 법 규정되어 있고 그 외 법적 근거가 없이 학교의 재량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에 관한 사항은 방과후학교 길라잡이(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현실 부합성이 결여됨. 조례 폐지 권고
156	충청남도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	교육	위임	현행 유지		
157	충청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조례	교육	위임	일반/개정		충청남도 학습부진 학생 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함(당연직4, 위촉직 남3, 위촉직 여3) - 협의회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비대면 방식을 반영할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 의견이 있음. 조례 제9조제4항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을 단서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158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교육	자치	현행 유지		
159	충청남도교육청 스승의 날 기념행사 지원 조례	교육	자치	일반/폐지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정한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로 스승의 날 행사지원이 가능함으로 조례 폐지 권고

160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교	육	자치	일반 정비		
161	충청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교	육	자치	일반/개정		위원회를 필요시 구성하는 한시적 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필요
162	충청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교	육	자치	현행 유지		
163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	교	육	자치	일반 정비		
164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교	육	위임	일반 정비		
165	충청남도교육청 교복나눔 활성화 조례	교	육	자치	일반/폐지		교복비 지원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필요성이 낮아져 폐지 권고
166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 시민교육 진흥 조례	교	육	자치	일반 정비		
167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교	육	자치	기타	현행 유지	
168	충청남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	교	육	자치	일반/통합/기타		충청남도 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에 본 조례의 효행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 시행중임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이 조례는 폐지하고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로 통합 검토
169	충청남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	교	육	자치	일반/폐지		현재 직업훈련과정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별도 기관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조례에 따른 운영이 없음. 조례 폐지 권고
170	충청남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	교	육	자치	일반 정비		
171	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	교	육	자치	일반/개정		조례 제2조에서는 제1실습소와 제2실습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집행부 기초자료에서는 제1실습소인 연무대기계공업고등학교부설공동실습소에 관한 사항은 없음. 실습소가 1개소만 운영되고 있다면 이에 적합하게 조례 정비 필요
172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교	육	자치	현행 유지		
173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교	육	자치	일반/기타	위원회 개최 권고	국제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2019년 1회 개최되었고 2020년에는 개최되지 아니함 조례 제10조에서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정기회를 개최하도록 권고
174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영장개방및사용료징수조례	교	육	자치	일반 정비		
175	충청남도교육청 방시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교	육	자치	일반/개정		유해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 제안
176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교	육	자치	일반/개정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규정 신설 제안
177	충청남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교	육	자치	일반 정비		
178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교	육	자치	일반 정비		
179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교	육	자치	일반 정비		
180	충청남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교	육	자치	일반 정비		

181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교	육	자치	일반 정비		
182	충청남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교	육	자치	현행 유지		
183	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촉진 조례	교	육	위임	일반 정비		
184	충청남도 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교	육	자치	폐지/기타		이 조례를 유지한다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교육부의 기본계획과의 연관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집행부 의견과 관련해서 교육시설법상 교육부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도교육청에 대하여 “「유아교육법」 제7조 제2호·제3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사립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제3호에 따른 공립학교·사립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법 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교육관련 시설」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가 충청남도 도립학교 시설물에 한정된 “충청남도 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계획 수립의 범위가 다름. 교육시설법상 시행계획의 수립은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아니므로 반드시 조례를 통해서 수립할 필요는 없으며, 교육시설법상 시행계획에 이 조례상의 규정 내용이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이 조례를 유지할 실익은 없다고 할 것임
185	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교	육	위임	일반 정비		
186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교	육	위임	일반 정비		
187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교	육	위임	일반 정비		
188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교	육	자치	일반/기타		법령 및 타시도 조례 개정 내역을 반영하여 알기 쉽도록 점진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심층 분석을 통해 조례 개정안 검토